

의안번호	제 107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월 일 (제 회)

**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
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1년 1월 10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1년 1월 10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일괄로 개정 추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인용조문 변경, 조직 명칭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일괄개정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제3항”을 “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110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복지정책과장”을 “보건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노인장애인복지과장”을 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노인장애인복지과장”을 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보건위생과장”을 “보건정책과장”으로, “보건약담당”을 “건강증진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가.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

제6조(「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4항 중 “지역개발과장”을 “균형개발과장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충청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도로법」 제64조 및 법 제67조”를 “「도로법」 제76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청소년기본법」 제13조”를 “「청소년기본법」 제11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충청북도체육진흥협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</p>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민의 사회 복지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 133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(이하 "기금" 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민의 사회 복지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(이하 "기금" 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 ~ 제6조 (생략)</p>	<p>제2조 ~ 제6조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(생략)</p> <p>② 기금운용관은 <u>복지정책과</u>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 사무관으로 한다.</p>	<p>제7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② 기금운용관은 <u>보건복지국장</u>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 사무관으로 한다.</p>

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~ ② (생략)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, 부위원장은 <u>노인장애인복지과장</u>이 되고 위원은 사회복지관련 전 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 ④ (생략)</p>	<p>제7조(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, 부위원장은 <u>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</u>이 되고 위원은 사회복지관련 전 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시설관리) 노인복지회관의 시설 관리 책임자는 <u>노인장애인복지과장</u>이 된다. 단, 위탁관리를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시설관리) 노인복지회관의 시설 관리 책임자는 <u>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</u>이 된다. 단, 위탁관리를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.</p>

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간사와 서기) ① (생략) ②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보건의약담당으로 한다. ③ (생략)	제10조(간사와 서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강증진담당사무관으로 한다. ③ (현행과 같음)

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충청북도지사 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10. 8. 11></p> <p>1. 당연직</p> <p>가.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장 및 부위원장</p> <p>나. 충청북도 문화여성환경국장, 균형건설국장</p> <p>2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충청북도지사 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10. 8. 11></p> <p>1. 당연직</p> <p>가.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</p> <p>나. 충청북도 문화여성환경국장, 균형건설국장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회의) ① ~③ (생략)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<u>지역개발</u> <u>과장</u> 이 된다. ⑤ (생략)	제15조(회의) ① ~③ (현행과 같음)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<u>균형개발</u> <u>과장</u> 이 된다. ⑤ (현행과 같음)

충청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사(이하 "지사"라 한다)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「도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4조 및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 인자부담금(이하 "원인자부담금"이라 한다)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사(이하 "지사"라 한다)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「도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원 인자부담금(이하 "원인자부담금"이라 한다)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
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